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2016-06 호
의 결 연월일	2016. 2. . (제 2 회)

의 결
사 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 설 · 강 화 규 제 심 사 안

제 출 자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제출연월일	2016. 02. .

목 차

I.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 제도(개정안) 개요	2
II. 규제심사안	5
1. 대부업 등록소관 변경	5
2. 대부업 등록요건	13
3. 중요사항 자필기재 간주	27
4. 총자산한도	37
5. 대부채권 양도금지 대상	46
6.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55
7.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63
8.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74
9. 대부협회 의무 가입대상	87
10.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기준	96

I.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 대부업 등록소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 등록대상인 대부업자등의 범위를 자산 120억원 이상(대부잔액이 50억 미만인 경우는 제외)인 자로 규정 ○ 대부업체는 등록소관 변경 사유 발생시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 중인 기관에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
2. 대부업 등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자기자본) 신 설 ○ (고정사업장) 강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 등록요건으로 3개월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고정사업장(숙박 시설 제외)을 갖추어야 함 ○ (겸업금지업무)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 대부업 등록시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을 다음과 같이 정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 등록 개인 대부업자 : 1천만원 2) 시·도지사 등록 법인 대부업자 : 5천만원 3) 금융위에 등록 대부업자 : 3억원 ○ (고정사업장) 대부업 등록시 대부업자가 갖추어야 할 고정사업장에서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사업장의 사용권 확보기간을 기존 3월 →6월로 연장 ○ (겸업금지업무)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자의 겸업금지 업종으로 단란/유흥주점업 및 다단계 판매업을 규정
3. 중요사항 자필기재 간주	○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법에서는 대부계약 체결시 중요사항은 거래 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자필 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방식을 시행령에 위임 - 시행령을 통해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유무선 통신을 통한 음성 녹음 등 방식을 구체화
4. 총자산한도 규제	○ 신 설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자산 규모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5. 대부채권 양도제한	○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여신금융기관, 매입채권 추심업자, 공공기관¹⁾, 정리금융기관²⁾을 규정 <p>* 1)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p>

		<p>공사, 주택금융공사</p> <p>2)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양수·정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p>
6.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등	○ 신 설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로서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경우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및 보호감시인 선임 의무를 부과
7. 대주주 거래제한	○ 신 설	<p>○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없는 신용공여의 유형을 구체화하고,</p> <p>- 금융위 보고·공시의무가 있는 신용공여 한도를 10억원 또는 해당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의 10/10,000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함</p>
8.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의무	○ 신 설	<p>○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금 예탁 및 보험·공제 가입금액의 최소 보장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p> <p>1) 시·도지사 등록업체 : 1천만원</p> <p>2) 금융위 등록업체 : 5천만원</p> <p>○ 대부업자는 등록취소, 폐업</p>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대부채권 잔존시 최장 3년간 보증금 예탁 등 의무를 유지하도록 함
9. 대부협회 의무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은 금융위 직권 검사대상 대부업자가 협회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의 자율규제기능 강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협회 의무 가입대상을 법인 대부업자 전반으로 규정
10. 등록취소·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법에 따라 등록취소 등 제재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법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 부과기준을 정함

□ 제도(개정안) 개요

가. 대부업 등록체계 정비

① 금융위 등록·감독대상 대부업자의 범위(안 §3③·④)

-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은 제외)인 대부업자를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

※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보유한 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자 등은 이미 금융위 등록대상에 포함(§3②)

② 등록소관 변경에 따른 등록변경 절차(안 §3⑤)

-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설치 등으로 등록기관이 금융위(또는 시·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대부업자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된 기관에 등록변경을 신청토록 함

③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등록요건(안 §3의7)

- (겸업금지 업종) 대부업과 겸업시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단란·유흥주점업과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지
- (사회적 신용) 여타 금융법령에 준하여, 대부업 등록시 대주주 및 등록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적 신용 요건'을 규정

* 例示: 최근 5년간 금융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④ 대부업자별 최소 자기자본 기준 마련(안 §3의5 및 §3의6)

- 영업 형태의 특성, 총 자산규모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하여, 대부업자별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
 - i)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
 - ii)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3억원

나. 대부업자의 건전경영 유도

① 대부업자 총 자산한도 규제 구체화(안 §7의2)

- 외형규제 도입 초기인 만큼 대부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우선 10배*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 검토
 - *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외형확대 방지 등을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을 자기자본 10배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제한토록 함(§7의3)

② 대기업집단 소속 대부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 규제(안 §10)

- ※ 개정 대부업법은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대부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되, 세부기준은 시행령 위임(§10①)
- (신용공여 범위) 은행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등 다른 금융 법령에 준하여 신용공여의 세부 범위*를 규정
 - * 대부, 지급보증, 유가증권 매입, 대주주를 위한 담보제공·어음배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대여 등
- (보고대상 거래) 금융위 보고·공시 대상인 신용공여 거래를 10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0.1%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

다.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

① 보호기준 마련 및 보호감시인 선임 기준(안 §9의6)

-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 선임이 필요한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기준을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으로 정함

②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안 구체화(안 §12)

- (최소 보장금액) 영업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별로 다음 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또는 보험·공제 가입)하도록 함

1)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 1천만원

2)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 5천만원

- (유지기간)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 잔존시 최장 3년 동안 최소 보장금액을 유지

③ 자필기재 간주방식 구체화(안 §6의2)

-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계약 체결시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음성녹음 등의 방식*을 구체화

* 대부업자가 유무선 통신을 통해 본인 확인내용 및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해당 답변내용에 대한 증거자료(음성녹음 등)를 확보하는 경우 등

④ 대부채권 양도대상 제한(안 §9의4)

- 대부업자·금융회사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금융회사, 매입채권추심업자, 공공기관*, 정리금융기관**
으로 제한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양수·정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라.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① 여신금융기관의 범위 명확화(안 §2의2)

- 별도의 등록 없이도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신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보험업법 등 여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규정

* 종전에는 여신금융기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의존하였으나, 개정법은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법령에 따른 금융회사로 이를 명확화

② 대부업협회 의무 가입대상 규정(안 §20⑤ 및 §20의2)

- 협회 자율규제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법인 대부업자를 의무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협회에 대부업체 교육업무 위탁

II. 규제심사안

1. 대부업 등록소관 변경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① 개정 대부업법(16.7.25일 시행)에 따라 2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체 등은 기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등록소관이 변경

* 개정법상 금융위 등록대상 : 2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자,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자

⇒ 시행령을 통해 금융위 등록대상으로 자산기준 120억을 초과 (대부거래잔액 50억 미만은 제외)하는 업체를 추가

- ② 대부업체는 자산규모 변동 등을 이유로 등록소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내에 현재 등록 중인 지자체 등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시행령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3(등록 등의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3조(등록 등의 절차) ①~② (생략) ③ <u>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잔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u> ④ <u>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등록기관이 변경되는 대부업자등은 등록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 중인 시·도지사등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기관 변경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u>
⑤ ~ ⑪ (생략)	⑤ ~ ⑪ (생략)

②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0000							
	규제사무명	대부업 등록소관 변경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거래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제안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진형구							
4. 근거법령명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피규제자	대부업자	대부업자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금융이용자	금융이용자	입법예고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법에서 재검토(존속기한)을 두고 있지 않은 사항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현행 규제내용 ○ 없음								
	- 신설(강화)규제내용 ○ 금융위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범위를 자산 120억원 이상(대부거래잔액 50억 미만 제외)인 자로 규정 ○ 대부업체는 자산규모 변동 등에 따라 등록소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재 등록 중인 기관에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8. 규제체계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설)</td> </tr> </table>		현행	(신설)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th>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범위를 자산 120억원 이상(대부채권잔액이 50억원에 미만하는 경우 제외)인 자로 규정 ○ 대부업체는 자산규모 변동 등에 따라 등록소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재 등록 중인 기관에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td> </tr> </table>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범위를 자산 120억원 이상(대부채권잔액이 50억원에 미만하는 경우 제외)인 자로 규정 ○ 대부업체는 자산규모 변동 등에 따라 등록소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재 등록 중인 기관에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현행									
(신설)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범위를 자산 120억원 이상(대부채권잔액이 50억원에 미만하는 경우 제외)인 자로 규정 ○ 대부업체는 자산규모 변동 등에 따라 등록소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재 등록 중인 기관에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부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나,

* 대부잔액이 ('06년말) 3.5조원 → ('14년말) 11.2조원으로 크게 확대

○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등록·관리·행정처분)이 지자체에 일임되어 담당인력 부족 등 관리·감독에 한계

*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1인당 약 60개의 대부업체를 담당(서울시의 경우 1인당 192개)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지자체 단위에서 관리가 곤란했던 대형 대부업체 등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대부업체의 다양한 업태 및 영업범위에 적합하게 중앙·지방정부의 관리 및 감독기능을 조정하여 대부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이 가능

2.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금융위 등록기준) 자산규모가 높은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거래자 수 및 대출금액이 상당하여 대부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높음에도 지자체에 관리·감독을 일임할 경우, 대부이용자 보호에 어려움이 예상

- (등록변경절차) 개정법에 따라 등록소관이 이원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변경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현행 유지안은 불가

< 비규제대안 :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가. 금융위 등록기준

- 자산규모 기준을 상향하는 경우 시장 영향력이 큰 대부업체임에도 금융위 관리·감독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부이용자 보호에 어려움이 예상
 - * 자산규모 기준을 12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시, 금융위 관리·감독대상 업체는 00개에서 00개로 감소('14년말 대부업 실태조사 기준)
- 또한, 현행 대부업법에서도 자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 보아 금감원의 직권 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법 제12조, 령 제7조의2),
 - 금융위 등록기준으로 이를 상회하는 자산 기준(예: 200억)을 정할 경우 기존 금감원 직권 검사가 가능했던 상당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관리 감독·권한을 일임하게 되는 결과 초래
 - *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기존 금감원의 지자체 등록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 검사 조항(법 제12조제4항)이 삭제된 상황

나. 등록변경절차

- 대부업체가 등록소관 변경절차에 개입하지 않고 감독당국이 획일적으로 이를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 감독당국이 모든 대부업체의 영업현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산 변동 등에 따른 등록소관 변경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

< 규제대안 : 자산규모 120억 기준(단 대부채권 잔액 50억 미만 제외) >

가. 금융위 등록기준

- 자산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대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위법행위시 소비자 피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위 및 금감원의 전문적인 검사·감독이 필요함

* 대부잔액 000조원(전체 대비 000%), 대부거래자수 000만명(전체 대비 000%)으로서 시장영향력이 상당('14년말 실태조사결과 기준)

⇒ **현행 대부업법 하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산 100억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검사감독권한을 전속하지 않고,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하도록 함**(법 제12조제4항, 령 제7조)

□ 또한, 자산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 등록대상 여부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

□ 한편, 자산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대부잔액이 적은 경우에는 대부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 대부잔액이 50억원에 미만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가능성을 차단

⇒ **현행 대부업법 하에서도 대부잔액이 50억원에 미만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의 직권 검사대상에서 제외**(법 제12조제4항, 령 제7조)

나. 등록변경절차

□ 대부업체 등은 자산 변동 등에 따라 등록소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 중인 기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대안의 분석

< 해외사례 분석 : 국내사례 분석도 추가 >

1. 금융위 등록기준 (해외사례)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대부업자의 등록소관을 이원화하는 해외 입법례는 없으며,

○ 일본의 경우 복수 지자체에 영업소가 소재하는지를 기준으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등록 및 감독권한을 이원화

* (등록) 1개 지자체 소재: 도도부현

2 이상 지자체 소재 : 금융청 감독 하에 재무국(재무성 지방조직)

(감독) 법·제도개선은 금융청, 집행은 재무국과 도도부현

2. 등록변경절차 (국내사례)

국내법상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기간 및 행정기관이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기간 등을 15일로 규정한 경우가 다수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개발이익환수법 제25조제1항, 게임산업법 제23조, 건축법 제4조의2·5,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7조,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 가족친화법 시행령 제14조 등

<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 기간('15.11.25~'16.1.4일)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의 반대의견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자산규모가 높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지자체 등록소관을 유지할 경우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체의 자산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경우, 시장 영향력이 큰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

* 현행 대부업법에서도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 보아,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

대부업체의 변경등록 신청이 없는 경우 적시에 등록소관 변경이 이루어지지 어려워 대부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움

< 결론 >

현행 금감원 직권 검사 대상기준 및 시장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자산 규모 120억 이상(대부거래잔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인 업체를 금융위 관리·감독대상으로 규정

또한, 등록소관 이원화에 따른 효과적인 변경등록 절차를 위해 대부업체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 중인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 동 의무는 위반시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고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 정도가 매우 낮음

* 감독당국은 수시 및 정기 검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등록소관을 변경할 수 있음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자산 120억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 제외)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대상으로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0		9
총 합계		0		9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적 분석		자산규모가 높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위의 전문적인 검사·감독이 가능하게 되어 대부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자산 120억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 제외)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대상으로 규정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직접비용		직접 편익	총	0
	간접비용			총	0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간접비용				
	간접편익				
* 피규제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편익	0
		총 비용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없음			
	편익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정부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0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대부거래잔액 50억 미만 제외)를 금융위 관리·감독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 업체가 약 47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나(총 204개 업체 금융위 등록 예상),

* 개정법상 자기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산정('14년말 대부업 실태조사 기준)

○ 금감원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 및 담당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이에 따른 관리·감독업무 집행에 행정적·재정적인 문제는 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자산규모가 큰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기존 지자체

에서 금융위로 이관되는 만큼 지자체의 관리·감독과 관련한 문제는 없음

- 한편, 지자체는 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관리·감독 이관대상 대부업자에 대한 문서를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일정 등에 대해 행자부·금융위·지자체간 협의가 완료된 상황

* '16.4월 문서이관대상 업체 선정 → '16.5월 문서 이관작업 개시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 시장영향력과 현행 금감원 직권 검사대상 기준(자산 100억원 이상)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관리·감독대상 대부업자의 자산기준을 설정하고,
 - 효과적인 변경등록절차를 위해 대부업체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입법예고 기간('15.11.25~'16.1.4일)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의 반대의견 없음

2. 대부업 등록요건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개정법의 위임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등록요건 중 최소 자기 자본 요건, 고정사업장 요건, 겸업금지업종에 대해 규정
- (자기자본 요건) 대부업 등록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중 개인 업자는 1천만원 이상, 법인업자는 5천만원 이상,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규정
- (고정사업장 요건) 고정사업장 결격사유를 기존의 숙박 시설에서 공동·단독주택까지 확대하고 고정사업장의 최소 확보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
- (겸업금지업종) 개정법상 대부업자등의 겸업금지업무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 및 사행산업 외에도 단란·유흥주점영업, 다단계판매업을 겸업금지업종으로 추가

<시행령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3조의5(자기자본) 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p>1. 개인인 대부업자등 : 1천만원 2. 법인인 대부업자등 : 5천만원</p> <p>②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p> <p>③ 제1항·제2항의 자기자본 및 순자산액을 산정할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이후부터 등록신청일까지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p>
<p>제2조의6(고정사업장)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p>	<p>제3조의6(고정사업장)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 ----- -----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6개월 -----.</p>

<신 설>

제3조의7(겸업금지업종 등) ① 법
제3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에 따른 사행산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
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4.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5. 그 밖에 대부업등과 이해상
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업종

②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0000			
	규제사무명	대부업등의 등록요건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거래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제안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진형구			
4. 근거법령명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대부업자	대부업자	입법예고	없음
	이해관계자	금융이용자	금융이용자	입법예고	없음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법에서 재검토(존속기한)을 두고 있지 않은 사항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현행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 등록 요건 중 최소 자기자본 요건 및 겸업금지 규제가 없음 ○ 고정사업장 요건과 관련하여 숙박시설이 아닌 건물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토록 규정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자기자본 금액과 관련하여 지자체 등록업자의 경우,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으로 정하고, 금융위 등록업자의 경우 3억원으로 정함 ○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고정사업장 결격 사유로 정하고 고정사업장 최소 확보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등의 경우,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단란·유흥주점영업, 다단계판매업 등의 겸업을 금지 				
8. 규제체계도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자기자본 요건, 겸업금지 규제가 없음 ○ 숙박시설 외 건물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만으로 고정사업장 요건 충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자기자본 요건, 겸업금지규제 신설 ○ 고정사업장 요건 강화 (단독·공동주택 이용 금지, 최소 확보기간 연장)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 등록만으로 누구든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고 등록요건도 완화되어 있어 영세 대부업자 난립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

* '15.6말 기준 전국에 8,762개의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등록

○ 특히, 수익구조가 취약한 영세대부업자의 경우 불법 고금리 수취 등 위법행위 유인이 높고, 위법행위 후 폐업한 경우에도 적정 자본금이 갖추어 있지 않아 피해배상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 주거건물을 영업장소로 사용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리·감독이 어려움

⇒ 이에 따라 대부업체가 영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고정사업장 구비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영세 대부업자로 인한 대부이용자 피해 발생가능성을 방지할 필요

또한, 대부업자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이용자의 권익 또는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겸업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대부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 대부업과 겸업시 피해 우려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겸업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02년 대부업법 제정에 따른 대부업 등록제 도입으로 대부업 양성화의 입법목적은 달성한 만큼, 향후에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대부

이용자 보호를 중점 과제로 추진할 필요

- 이에 따라 '15.7월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 개편 및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개정법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등록요건을 구체화할 필요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 대부업등의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대부업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대부업 영위에 필요한 영업기반을 갖추도록 유도하여,
- 영세업자 난립에 따른 대부시장의 문제점 해소 및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자기자본 요건) 개정법에서 최소 자기자본 금액을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행 유지는 불가
- (고정사업장 요건) 영세업자들이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주택을 영업소로 등록하는 경우 외부에서 영업소 식별이 되지 않아 대부이용자의 혼란을 유발할 소지가 있고,
 - 대부업 영위(고객 상담, 서류 작성 등)시 주거용 건물은 영업소로 무의미하며 대부업 검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 (겸업금지업종) 개정법에서 겸업금지업종으로 직접 열거한 전기통신사업 및 사행산업만을 겸업금지업종으로 정하는 대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 단란/유흥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 겸업시 대부자금 유입에 따른 금융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규제 필요

< 비규제대안 :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자기자본 요건) 모든 대부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개정법상 최소 금액인 1천만원을 적용하는 대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 대부업자의 형태 및 영업규모가 다양한 만큼 최소 자기자본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 확보 곤란
- (고정사업장 요건) 원안대로 숙박시설, 주택 등의 용도를 제한하되, 고정사업장의 최소 확보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 대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 3개월의 사용권의 확보만으로 3년간 대부업등의 등록 유지가 가능하여 고정사업장의 규제 목적 달성 곤란
- (겸업금지업종) 단란·유흥주점업 및 다단계 판매업은 대부업과 겸업시 대부이용자의 피해발생 우려 및 신용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큰 업종으로서 이를 제외하는 대안을 고려하기 어려움

< 규제대안 >

- ① (자기자본 요건) 자기자본은 정상적 영업을 위한 자금공급기능과 더불어 손실 발생시 최종적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부업체 규모 및 영업형태 등에 따른 차별적 진입규제 마련
 - (지자체 등록 : 개인)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법상 위임된 최소 범위인 1,000만원을 자기자본 요건으로 규정
 - (지자체 등록 : 법인) 현금유동성 및 사업장 보증금 등을 감안시 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 5,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구비하도록 함
- 법인대부업자의 경우 평균 대출액 규모가 85백만원에 해당하고, 고정사업장 구비 의무(임대 보증금 등)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대부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5천만원의 자기자본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금융위 등록) 금융위 등록 예상 업체의 평균 대출금 규모(1,067억원) 등을 감안하여 3억원을 최소 자기자본으로 정함
 - 개정법상 금융위 등록업체에 대한 총자산한도 규제(자산/자기자본≤10) 도입으로 인해 요건 미달 업체 상당수는 자율적으로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으로 예상
- ② (고정사업장 요건) 대부업 등록을 위해 고정사업장을 갖추는 경우 건축법상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사용권 확보기간을 기존 3월→6월 연장하도록 함
- ③ (겸업금지업종) 대부업과 겸업시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 단란·유흥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을 정하여 겸업을 금지

나. 대안의 분석

< 해외사례 분석 >

해당 사항 없음

<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 기간('15.11.25~'16.1.4일)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의 반대의견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자기자본 요건) 개정법에서 최소 자기자본금액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행 유지는 불가

(고정사업장 요건) 현행 제도상 숙박시설 외 용도제한이 없어 고정사업장 규제가 형해화될 수 있고,

- 영세 대부업자들이 거주 주택을 기초로 등록 후 별도 영업소 없이 비대면 영업 확대 등 변칙적 영업 가능성이 상존
- (겸업금지업종) 대부업과 겸업시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규정
 - (단란/유흥주점업) 대부를 통해 과도한 영업 유치를 하거나 종업원에게 선불금 형태의 대부를 통해 예속관계를 강화할 수 있고,
 - 범죄단체 등을 통한 무리한 추심행위가 발생할 소지
 - (다단계판매업)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다단계 하위 판매원에게 무리한 대출을 강요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우려
 - 최근 공정위는 대출 강요와 관련한 불법 다단계 판매사태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15.2.27자 공정위 보도자료)

참고

대출 강요 관련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 사례

※ ‘15.2.27자 공정위원회 보도자료(“대학생 상대 불법 다단계 판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참조)

<수백만 원의 물품 강매 · 대출 강요>

- 상위 직급에서 시작해야 더 빨리 직급이 올라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하여 수백만 원의 물품을 사도록 함.
 - 구매 대금이 없는 대학생에게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며 거부시 상위 판매원이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
 - 물품 구입을 거절하는 학생들은 상위 판매원과 일대일 면담 과정을 거치며, 물품 구입을 결정할 때까지 면담을 지속함.
 - 상위 판매원은 대출이 완료될 때까지 옆에서 감시하며, 대출금이 입금 되는 즉시 물품 대금 지급을 강요함.

【대출금으로 고통 받는 사례】

- G씨는 “자녀가 제2금융권에서 자녀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신용 불량자로 등록 되었다”는 연락을 받음.
- G씨의 자녀는 상위 판매원으로부터 대출을 권유받아 6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구입한 대부분의 물품의 포장을 뜯어 환불 받지 못해 600만 원 상당의 빚이 생김.
- 현재 자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높아 이자 감당도 어려운 상황임.

【물품 강매·대출 강요 사례】

- 상위 판매원은 E씨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여 투자하면 직급이 빨리 오르고 직급이 오르면 월 500만 원은 쉽게 벌 수 있다’ 며 물품 구매와 대출을 집요하게 권유함.
- E씨가 물품 구입을 하지 않자, 판매원들은 직급별로 돌아가며 밤늦게까지 일대일 면담을 실시함.
- 견디다 못한 E씨는 결국 물품 대금 마련을 위해 6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물품 구매 계약서를 작성함.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자기자본 요건) 대부업자의 형태 및 영업규모가 다양한 만큼, 최소 자기자본을 개정법에서 정한 최소 위임한도인 1천만원으로 일원화할 경우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
- 지자체 등록 법인업자의 경우에는 현금유동성 및 사업장 보증금 등 감안시 최소 5천만원의 자기자본의 구비 필요
-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영업규모 및 시장내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최소 3억원의 자기자본 구비 필요
- 특히, 금융위 등록 대상인 매입추심업자는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추심 위주의 영업을 하는 특성상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높은 수준의 진입규제 필요

- (고정사업장 요건) 고정사업장 확보기간을 최소 3개월로 정하는 경우, 3개월간의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3년간 등록을 유지할 수 있어 고정사업장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
 - 또한, 대부업자는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영업취소사유에 해당(法§13)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고정사업장 확보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필요
 - * '12년~'14년 상반기 중 서울시 행정처분 내역 0000건 중 소재지 불명으로 인한 등록취소가 000건(000%)을 차지
- (겸업금지업종) 대형 대부업자의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다단계 판매업 겸업을 허용할 경우, 대부이용자의 권익 침해 우려가 있음

< 결론 >

- 해당 규제는 개정법의 위임에 따라 대부업자의 대부업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업기반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규제로 판단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대부업등 등록요건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0		9
총 합계		0		9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적 분석			

<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대부업등 등록요건 강화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직접비용		직접 편익		
	총	0		총	0
	간접비용			간접 편익	
	총	0		총	0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간접 비용				
	간접 편익				
* 피규제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정부					
구분		제목	금액	구분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 기존 지자체의 전담 업무를 금융감독원이 분담하게 되므로 원안대로 등록요건을 강화하더라도 행정적, 재정적 집행 가능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자기자본 규제, 영업소 규제 등은 여타 금융권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인 만큼 기술적으로 집행 가능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기존 지자체에서 전담하던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업무 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이 분담함에 따라 지자체의 집행자원 운용상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입법예고 기간('15.11.25~'16.1.4일)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의 반대의견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 대부업체가 건전하게 영업하기 위해서는 일정 유동자산(현금 등), 고정사업장(보증금 등)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부업체가 정상적 영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기준을 마련하고,
-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고정사업장 요건에서 주택을 제외하고 유지기간을 연장할 필요
- 또한, 대부업체의 겸업금지업종으로서 현재 대부이용자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나 대부업체와의 이해상충 개연성이 매우 높은 다단계판매업과 단란/유흥주점업을 정함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대부업체가 적절한 자본력을 구비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중요사항 자필기재 간주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계약 체결시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음성녹음 등의 방식을 구체화(승§6의2)
 - * 대부업법은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상 중요사항(대부금액, 이자율 등)을 거래 상대방이 자필기재 하도록 하고,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공인 인증서를 통한 방식을 구체화(法§6의2)
- 유무선 통신을 통해 본인확인내용과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해당 답변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음성녹음 등을 통해 확보하며,
-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확인서를 통해 음성녹음 등 내용을 거래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를 자필간주로 규정
- * 대부업자가 유무선 통신을 통해 본인 확인내용 및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해당 답변내용에 대한 증거자료(음성녹음 등)를 확보하는 경우 등

<시행령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생 략) <u><신 설></u></p>	<p>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무선통신으로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 및 법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그 증거 자료를 확보, 유지할 것 2. 제1호에 따른 음성녹음 등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전화 나. 인터넷홈페이지 다. 서면확인서(계약상대방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대부업자등은 계약상대방에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p>

②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0000			
	규제사무명	중요사항 자필기재 간주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 규제/거래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제안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진형구			
4. 근거법령명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피규제자	대부업자	대부업자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금융이용자	금융이용자	입법예고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법에서 재검토(존속기한)을 두고 있지 않은 사항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신설(강화)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조건 충족시 거래상대방이 대부계약의 중요사항을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무선 통신을 통해 본인확인내용과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해당 답변내용에 대한 증거자료(음성녹음 등)를 확보하며, -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확인서를 통해 음성녹음 등 내용을 거래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8. 규제체계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p style="text-align: center;">현 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p style="text-align: center;">개 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무선통신을 이용한 자필기재 간주 방식 구체화 </div>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 등 대부계약 체결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계약 중요사항 자필기재 간주방식을 제한된 조건하에서 구체화하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대부업법은 대부계약 체결시 중요사항은 거래상대방이 자필기재하도록 하면서 음성녹음 등 방식으로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 현재 관련 시행령 조항이 부재하여 대부업체의 영업활동에 제약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 대부계약 중요사항 자필기재 간주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대부계약 체결 환경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대부이용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개정법상 거래상대방이 대부계약의 중요사항을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한 만큼 현행 유지안은 어려움

〈 비규제대안 :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해당 사항 없음(동 규제의 신설 또는 현행 유지 여부만이 고려될 수 있을 뿐, 덜 규제적인 대안이 없음)

< 비규제대안 :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대부업법에서는 음성녹음 등 방식에 의해 자필기재 간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규정하고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 시행령을 통해 유무선 통신을 통해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및 증거자료 보존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적 방안을 충분히 마련

나. 대안의 분석

< 해외사례 분석 > : 국내사례 분석으로 대체

보험업법상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아래 조건 충족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면제(令§43, 監督規定§4-37)

*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신용생명보험계약, 신용손해보험계약 등

-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본인확인, 보험청약내용 등)을 설명하고, 해당 답변에 대한 증거자료(음성녹음 등)를 확보·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
-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확인서를 통해 음성녹음 등 내용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을 것

<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기간('15.11.25~'16.1.4일)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당해 규제에 대한 의견은 없었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비대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 시행령을 통해 음성녹음 등 방식에 의한 자필기재 간주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해당 사항 없음

< 결론 >

개정법상 위임문구 및 대부계약 체결의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에서 거래상대방의 중요사항 자필기재의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대부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움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중요사항 자필기재 구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0		9
총 합계		0		9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적 분석				

<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중요사항 자필기재 구체화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직접비용	총	0	직접 편익	총	0
	간접비용	총	0	간접 편익	총	0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간접 비용					
	간접 편익					

* 피규제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총 비용	0	편익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총 비용	0	편익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총 비용	0	편익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정부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총 비용	0	편익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 대부업자의 음성녹취 시스템 설치 및 동 시스템을 통한 증거자료의 확보·유지 등 의무는 대부업자의 선택적 준수사항으로서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집행에 문제는 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부업자의 음성녹취 시스템 설치 및 동 시스템을 통한 증거자료의 확보·유지 등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 가능하므로 동 규제를 집행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설된 규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동 규제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음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 향후 신설된 규제와 관련한 대부업체의 음성 녹취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사례를 추가 분석하여 동 규제의 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음성녹취 시스템을 통한 거래상대방의 대부계약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간주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 비대면 대부계약 체결에 따른 절차가 명확화되어 대부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음성녹음이 자필기재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교부·보관의무는 유지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입법예고기간('15.11.25~'16.1.4일)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당해 규제에 대한 의견은 없었음

4. 총자산한도 규제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 확대 방지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시행령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2(총자산한도)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라 함은 10배를 말한다.

②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0000			
	규제사무명	총자산한도 규제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거래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제안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진형구			
4. 근거법령명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대부업자	대부업자	입법예고	없음
	이해관계자	금융이용자	금융이용자	입법예고	없음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법에서 재검토(존속기한)을 두고 있지 않은 사항				
7.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신설(강화)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 				
8. 규제체계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p style="text-align: center;">현 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설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p style="text-align: center;">개 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 </div>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대부업체는 금융회사 차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고금리 대출을 하며 이를 통해 영업수익을 창출

* '15.6월말 대부업체의 차입금 잔액은 8.3원으로, 그 중 금융회사 차입은 3.8조원, 회사채 발행 1.0조원, 기타 차입(개인, 관계사 등) 3.5조원 수준('15년 상반기 실태조사)

○ 자기자본 확충 노력 없이 과도한 외부 차입을 통해 무리하게 외형을 확대할 경우 금융시장 충격에 취약해지고 이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대부업체의 자산규모가 최근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할 필요성 증대

* 대부잔액(조원) : ('12.12말) 8.7 → ('13.12말) 10.0 → ('14.12말) 11.2 → ('15.6말) 12.3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대부업체의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에 대한 제한장치를 마련하여 시장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

2.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입법예고 기간('15.11.25~'16.1.4일)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의 반대의견 없음

< 비규제대안 :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개정법*상 위임된 최대 범위인 자기자본의 10배 수준에서 총자산 한도를 규정함에 따라, 별도의 비규제대안은 없음

* 개정법은 금융위 등록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제7조의3)

< 규제대안 1 :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규정>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대부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우선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설정

나. 대안의 분석

< 해외사례 분석 : 국내 사례로 대체 >

여신전문업법(법 제48조)에서는 여신전문회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단, 대부업법과 달리 업권별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총자산한도 비율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6배, 그 외 회사는 10배로 정함(감독규정 제7조의3)

<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 기간('15.11.25~'16.1.4일)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의 반대의견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해당사항 없음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개정법상 위임된 최대 범위인 자기자본의 10배 수준에서 총자산 한도를 규정함에 따라, 별도의 비규제대안은 없음

< 결론 >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자기자본의 10배로 규정하되 추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하도록 함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총자산한도 규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0		
총 합계		0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적 분석		강제적인 저축은행 상품 구입으로 대출 고객이 부담했던 간접적인 대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		

<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총자산한도 규제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직접비용	총	0	직접 편익	총	0
	간접비용	총	0	간접 편익	총	0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간접 비용					
	간접 편익					
* 피규제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총 비용	0	편익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총 비용	0	편익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총 비용	0	편익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정부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총 비용		편익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 대부업 검사, 반기별 실태조사 및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에 관한 변경등록 신청 등을 통해 총자산 및 자본금 변동 규모 등을 점검할 수 있어, 행정적·재정적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총자산한도 규제와 관련한 기술적 집행 가능성 문제는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총자산한도 규제는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과 관련한 문제는 없음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수준에서 규정하여 각 대부업체 별로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 및 자산을 유지하도록 함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총자산한도 규제를 통해 대부업자의 외형확대 중심 경영이 아닌 건전한 대부업 시장 조성을 유도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도모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입법예고 기간('15.11.25~'16.1.4일)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의 반대의견 없음

5. 대부채권 양도 제한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여신금융기관,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 공공기관*, 정리금융기관**으로 구체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양수·정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시행령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p>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법 제9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신금융기관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p>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p> <p>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자</p>
--	--

②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0000			
	규제사무명	대부채권의 양도 제한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거래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제안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진형구			
4. 근거법령명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대부업자	대부업자	입법예고	없음
	이해 관계자	금융이용자	금융이용자	입법예고	없음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법에서 재검토(존속기한)을 두고 있지 않은 사항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신설(강화)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① 여신금융기관, ②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 ③예금보험공사 및 정 				

	리금융기관, ④ 한국자산관리공사, ⑤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구체화(대부업법 제9조의4 위임사항)					
8. 규제체계도	<table border="1"> <thead> <tr> <th>현행</th> </tr> </thead> <tbody> <tr> <td>○ 신설</td> </tr> </tbody> </table>	현행	○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개정</th> </tr> </thead> <tbody> <tr> <td>○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① 여신금융기관, ②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 ③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④ 한국자산관리공사, ⑤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구체화</td> </tr> </tbody> </table>	개정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① 여신금융기관, ②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 ③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④ 한국자산관리공사, ⑤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구체화
현행						
○ 신설						
개정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① 여신금융기관, ②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 ③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④ 한국자산관리공사, ⑤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구체화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채권추심시 불법행위가 발생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채권이 양도될 경우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 금융위의 관리·감독 범위 내에 있는 자에게만 대부채권의 양도를 허용함으로써 채권의 양도 이력 등을 금융위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 대부채권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

* '15.9월부터 대부업체·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보유한 부실채권 매각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집중·관리(개정 신용정보법 §25②)

2.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현행 법은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채권을 양수하는 것만 금지하는 반면,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적 제약이 없는 상황
 - 이로 인해 대부업자가 자산건전성 관리 및 유동성 확보 등을 이유로 준법의식이 취약한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채권을 매각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불법 추심에 따른 피해 증가
- ⇒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채권 양도가 가능한 상황에서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불법 추심에 따른 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움

< 비규제대안 :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채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의 속성상 대부업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

< 규제대안 : 대부채권 양도의 제한 >

-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
 - 여신금융기관,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정리금융기관*으로 제한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양수·정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한, 이상에서 정한 채권양수대상은 모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권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부채권이 수차례 매각되는 경우에도 금융위는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정책을 원활히 이행 가능

나. 대안의 분석

< 해외사례 분석 >

(일본) 대금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양도 또는 회수의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상대방이 폭력단원 등 회수제한자인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또는 그 채권양도 등 이후 회수제한자가 그 채권을 양도받은 것 등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채권양도가 제한됨

(싱가포르) 미등록대부업자임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신하여 채권을 회수하거나 추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

<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 기간('15.11.25~'16.1.4일)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의 반대의견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약이 없는 현재 상황 하에서는

- 준법의식이 취약한 미등록 대부업자의 채권 양수 및 이에 따른 추심 행위를 막기 어려워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의 속성상 대부업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규제의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음

< 결론 >

대부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융위의 관리·감독 범위 내에 있는 여신금융기관,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자, 공공기관 등에만 대부채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대부채권 양도 제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0		9
총 합계		0		9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적 분석		불법 채권 추심에 따른 금융이용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		

<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대부채권의 양도 제한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직접비용	총	0	직접 편익	총	0
	간접비용	총	0	간접 편익	총	0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간접 비용					
	간접 편익					
* 피규제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총 비용	0	편익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총 비용	0	편익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총 비용	0	편익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정부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총 비용	9	편익	총 편익	0
			9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 금융위(시·도지사)는 규제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의무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제재처분을 부과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 집행상 애로 또는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 '15.9월부터 대부업자가 보유한 대부채권의 매각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서 집중·관리하므로(개정 신용정보법 §25②) 동 규제를 집행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대부업법은 금융위 등록대상 이외의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제재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였으므로, 지자체가 동 규제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 향후 대부채권의 양도 이력 등을 분석하여 동 대안의 적정성 및 대부채권 양수인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채권의 유통을 예방하고, 채권 양도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융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입법예고 기간('15.11.25~'16.1.4일)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의 반대의견 없음

6.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 보호기준 수립의무가 있는 대부업자등의 범위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개정법의 위임에 따라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수립 및 보호 감시인** 선임 의무를 부담하는 대부업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
 - *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法 §9의7①)
 - ** 보호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法 §9의7②)
- 이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 2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를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및 보호 감시인 선임의무 있는 대부업체로 규정

<시행령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6(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법 제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란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200억원을 말한다.

②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0000							
	규제사무명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거래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제안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진형구							
4. 근거법령명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대부업자	대부업자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금융이용자	금융이용자	입법예고	대부협회: 자산 1,00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해 보호기준 수립의무 부과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법에서 재검토(존속기한)을 두고 있지 않은 사항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p>- 현행 규제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선임에 관한 규제가 없음 <p>- 신설(강화)규제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법에서는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자등으로서 자산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자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할 의무 부과하면서 대상 업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法 §9의7①) ○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금액기준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 규모 2백억원 이상인 자로 규정 								
8. 규제체계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text-align: center;">현 행</th> </tr> <tr> <td>○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규제 없음</td> </tr> </table>		현 행	○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규제 없음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개 정</th> </tr> <tr> <td>○ 금융위 등록업자로서 자산 규모가 2백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 보호기준 마련 및 보호감시인 선임의무 부과</td> </tr> </table>		개 정	○ 금융위 등록업자로서 자산 규모가 2백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 보호기준 마련 및 보호감시인 선임의무 부과
현 행									
○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규제 없음									
개 정									
○ 금융위 등록업자로서 자산 규모가 2백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 보호기준 마련 및 보호감시인 선임의무 부과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대부업법 개정('16.7.25일 시행)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 및 관리·감독업무가 기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됨에 따라, 금융위 등록 대형업자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예정
- 그러나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여타 여신금융기관에 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취약하거나 고금리 이자수취, 불법추심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개정법에서는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 개편에 맞추어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보호기준 수립 및 보호감시인 선임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 업체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 시장 내 영향력이 큰 대형 대부업자들을 중심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준법 영업을 유도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하여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개정법에서 보호기준의 수립 및 보호감시인 선임이 필요한 대상 업체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행 유지는 불가

< 비규제대안 :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규제 기준인 자산 규모의 금액을 증액(예, 1천억원 이상)하여 규제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 자산 규모 2백억원 이상 업체도 전체 대부업자의 1%에 상당하는 75개에 불과한 만큼, 적용 범위 축소시 규제 목적 달성이 곤란
- 한편, 상당수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준법감시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가 많고, 대부협회의 보호기준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규제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16.1.21일 기준으로 협회 회원사 중 총 000개사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있음

< 규제대안 : 자산 규모를 1천억원 이상으로 증액하여 규제 범위 축소 >

- 대부업 이용자 보호 필요성 및 보호감시인 선임 여력 등을 고려하여 자산 200억원 이상 업체(75개)를 대상으로 선정

나. 대안의 분석

< 해외사례 분석 >

- 해당 사항 없음

< 이해관계자 협의 >

- 입법예고 기간('15.11.25~'16.1.4일)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대부협회 : 불수용)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경우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정법상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개정법의 위임에 의한 하위 입법의 필요가 있어 현행 유지 불가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14년말 기준 자산 1천억원 이상 업체 수는 30개에 불과(전체 대부업체 수는 7,390개)하고, 대부시장내 비중도 거래자수 기준 00%, 대부잔액 기준 00%에 불과하여 규제 목적 달성 곤란

○ 이에 반해 자산 2백억원 이상 업체는 총 75개로 전체 대부시장에서 거래자수 비중 00%, 대부잔액 비중 00%를 차지

○ 한편, 상당 수 대형 대부업자*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있고, 기존 임·직원의 보호감시인 겸직이 가능하며, 대부협회의 보호기준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시 규제 비용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

* '16.1.21일 기준으로 협회 회원사 중 총 333개사가 준법감시인 선임

또한, 총자산 200억원 이상 대부업자의 평균 임직원 수는 약 87명 수준으로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는 여신업권*과 비교시 내부통제시스템 운용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예상

*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여신업권(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의 평균 임직원 수는 16명에 불과

< 결론 >

해당 규제는 개정법의 위임에 따라 전체 대부업자의 상위 1% 이내의 대형 대부업체에게만 적용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실효성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시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 판단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0		9
총 합계		0		9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적 분석				

〈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직접비용		직접 편익	총	0
	간접비용			총	0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간접비용				
	간접편익				
* 피규제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총 비용	편익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정부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총 편익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 소수의 금융위 등록업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대부업협회의 보호기준 표준안 마련 등을 통한 지원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 집행 가능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상당수 대형 업자들이 준법감시인을 既 선임하였으며, 여타 금융권에도 내부통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제도 시행에 있어 기술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금융위 등록업체에 한하여 적용되는 만큼, 지자체의 집행 가능성은 고려 대상이 아님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해당 사항 없음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해당 사항 없음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대부협회 : 불수용) 보호기준 수립 및 보호감시인 선임 필요 대상을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규제의 실효성 확보 곤란

*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00개 대부업체가 대상으로서, 거래자 수 기준 00%, 대부잔액 기준 00%에 불과

7.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 신용공여의 정의
- 금융위 보고 및 공시의무가 있는 신용공여한도 기준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대기업집단 대부업자의 대주주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 규제와 관련하여 개정법의 위임에 따라 신용공여 정의
 - 타 금융법령*을 참조하여 대부업권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신용거래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하는 한편,
 - *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은행법, 보험법 등 참조
 - 그 외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교차·연계거래 등도 신용공여행위의 범위에 포함
- 또한, 금융위 보고·공시 대상 신용공여 금액을 10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10/10,000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함

<시행령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p> <p>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 대주주에 대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부동산,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5. 대부, 지급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
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6. 대부업자가 직접적으로 제1
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
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
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부업자에 손실을 끼칠 가
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
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
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
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

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0000							
	규제사무명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거래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제안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진형구							
4. 근거법령명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대부업자	대부업자	입법예고	없음				
	이해관계자	금융이용자	금융이용자	입법예고	없음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법에서 재검토(존속기한)을 두고 있지 않은 사항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p>- 현행 규제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대부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없음 <p>- 신설(강화)규제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법에서는 대기업집단 대부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개정법의 위임에 따라 신용공여의 정의 규정 필요 ○ 개정법에서는 대기업집단 대부업자가 대주주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금융위에 보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토록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개정법의 위임에 따라 대상거래의 기준금액을 10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10/10,000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 								
8. 규제체계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r> <tr> <td>○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없음</td> </tr> </table>		현행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없음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th> </tr> <tr> <td>○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도입되면서 신용공여의 정의 및 보고·공시 기준금액 규정 필요</td> </tr> </table>		개정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도입되면서 신용공여의 정의 및 보고·공시 기준금액 규정 필요
현행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없음									
개정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도입되면서 신용공여의 정의 및 보고·공시 기준금액 규정 필요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상 대기업집단 대부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규제가 없어,
- 대기업집단이 대부업체 설립 후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자금지원을 하고 자금지원을 받은 계열사가 부실화되는 경우, 그 피해가 투자자 및 자금공여자 등에게 전가될 가능성 상존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개정법에서는 대부업체가 계열사 부실화에 따른 충격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금액을 자기자본 금액 내로 제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고 및 공시의무를 부과
- 개정법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신용공여의 정의 및 보고·공시 기준 금액을 정할 필요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 대기업집단대부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무분별한 신용공여를 억제하여 계열사 부실화에 따른 피해로부터 투자자 및 자금공여자 보호

2.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개정법에서 신용공여의 정의 및 보고·공시 기준금액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행 유지 불가

< 비규제대안 :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신용공여의 정의) 신용공여한도 규제 회피 목적의 교차·연계거래* 등을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하는 대안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 *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장외 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차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 신용공여의 성질을 갖는 일부 거래를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유형의 거래를 통한 규제 회피 가능
- (보고·공시 대상) 대상거래를 은행권과 동일하게 50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10/10,000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는 대안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 규모 면에서 은행과 큰 차이가 있는 대부업자에 대해 은행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 발생 소지

< 규제대안 : 보고·공시 기준금액을 은행권 수준으로 증액 >

- (신용공여의 정의) 타 금융법령*을 참조하여 대부업권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신용거래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하는 한편,
 - *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은행법, 보험법 등 참조
- 그 외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교차·연계거래 등도 신용공여행위의 범위에 포함
- (보고·공시 대상) 대부업권은 타 금융업권에 비해 최소 자기자본 요건 및 자산규모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 최소 고정금액 기준은 타 금융업권 중 가장 낮은 예(10억원)*에 따라 결정하고, 자기자본 대비 비중도 타 금융업권의 수준(10/10,000)**으로 정함
 - * 투자자문·일임업자(등록제), 비금융지주회사 등

나. 대안의 분석

< 해외사례 분석 : 국내 사례로 대체 >

가. 신용공여의 유형

(1)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대출
2. 지급보증
3.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代支給金)의 지급
4. 어음 및 채권의 매입
5.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은행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거래
6. 은행이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 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대주주에 대한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 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5. 그 밖에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3)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대출

2. 어음 및 채권의 매입

3.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4. 보험회사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나. 보고·공시대상 기준

법령	최소자본금 기준	공시의무 신용한도 기준	비고
은행법	- 시중은행 1천억원 - 지방은행 250억원	min(자기자본×10/10,000(↑1억원), 50억원)	시행령 §20의5⑤
보험업법	- 일반보험 300억원 - 생명보험 200억원 - 자동차보험 300억원 - 화재보험 100억원 - 재보험 300억원	min(자기자본×1/1,000(↑1천만원), 10억원)	시행령 §57③
여신전문 금융업법	- 2개이하 업영위 : 200억원 - 3개이하 업영위 : 400억원	min(자기자본×10/10,000(↑2천만원), 10억원)	시행령 §19의3①
상호저축	- 특별시내 본점 소재 : 120억원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

은행법	- 광역시내 본점 소재 : 80억원 - 도내 본점 소재 : 40억원		
금융지주회사법	-	- 은행지주회사 : min(자기자본×10/10,000, 50억원) - 비은행지주회사 : min(자기자본×10/10,000, 10억원)	시행령 §16의5⑤, §24의2④
자본시장법	투자자문·일임업(등록업) 업무단위별 1억원 이상	min(자기자본×10/10,000(↑10만원, 10억원))	시행령 §39①
대부업법	1억원~5억원	-	-

< 이해관계자 협의 >

- 입법예고 기간('15.11.25~'16.1.4일)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의 반대의견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개정법의 위임에 의한 하위 입법의 필요가 있어 현행 유지 불가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신용공여 정의) 신용공여의 효과를 갖는 일부 거래를 신용공여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유형의 거래를 통한 규제 회피 가능성
- (보고·공시 대상) 은행권과 동일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대부업권의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은행 외 업권*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규제 운용 필요
- * 비은행지주사, 여전사, 보험사, 투자자문·일임사 모두 10억원 또는 10/10,000(또는 1/1,000) 중 작은 금액을 신용공여하는 경우 보고·공시의무 부과

< 결론 >

해당 규제는 대부업권의 현실 및 여타 업권의 규제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대주주 거래제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0		9
총 합계		0		9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적 분석				

<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대주주 거래 제한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직접비용	총 0	직접 편익	총	0
	간접비용	총 0		간접 편익	총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간접 비용					
	간접 편익					
* 피규제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정부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인력 활용시 행정적, 재정적 집행 가능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여타 금융업권에서도 유사 규제가 운용되고 있는 만큼, 도입 및 운용에 있어 기술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규제 대상은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인 만큼 지자체의 집행 가능성은 고려 대상이 아님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해당 사항 없음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자의 경우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하여 우회 자금지원을 차단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입법예고 기간('15.11.25~'16.1.4일)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의 반대의견 없음

8.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및 보험·공제 가입금액의 최소 기준으로,
 -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천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천만원을 정하고,
-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폐업 등 이후에도 최장 3년의 범위에서 대부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보증금 예탁 등을 유지하도록 함

<시행령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12조(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① 대부업자등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최소보증금액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 이상을 보증금으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예탁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 1천만원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 대부업자등 : 5천만원 <p>② ~ ③ (생략)</p> <p>④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제1항·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탁 및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⑤ (생략)

②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0000		
	규제사무명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거래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제안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진형구		
4. 근거법령명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피규제자	대부업자	대부업자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금융이용자	금융이용자	입법예고
<p>의견내용</p> <p>1. 법무부</p> <p>-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증금 유지기간(3년) 경과시에도 확정 판결시까지 보증 금액을 유지</p> <p>2. 대부협회</p> <p>-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보증금 예탁으로 일원화</p>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법에서 재검토(존속기한)을 두고 있지 않은 사항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p>- 현행 규제내용</p> <p>○ 신설</p> <p>- 신설(강화)규제내용</p> <p>○ 대부업자등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금 예탁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부과</p> <p>- 시도지사 등록 : 1천만원</p> <p>- 금융위 등록 : 5천만원</p> <p>○ 대부업자등은 등록취소,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장 3년의 범위</p>			

	내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보증금 예탁 등을 유지하여야 함	
8. 규제체계도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가입의무를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 등록 : 1천만원 - 금융위 등록 : 5천만원 ○ 대부업자등은 등록취소,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보증금 예탁 등을 유지하여야 함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대부업 시장에서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수취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 대부업 이용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피해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

<금감원 대부민원 접수 현황>

구 분	'12.4.18일~12.31.	'13년	'14년
고금리	6,292	1,941	1,145
채권추심	4,176	4,535	3,090
중개수수료	4,382	1,223	164
합 계	14,850	7,699	4,399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대부업 등록은 금융기관의 인허가와 달리 진입과 퇴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불법행위 후 잠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이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여야 하고 실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 대부업 영업 개시 전에 보증금 예탁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대부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 대부업체 유형별로 적정 수준의 보증금 예탁금액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대안의 분석

< 현행 유지안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가. 고려된 대안

- 개정법상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영업 개시 전에 일정 규모의 보증금 예탁 등을 의무화하여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위임한 만큼 현행 유지안은 어려움

< 비규제대안 :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최소 보장금액) 대부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소 보장금액을 시도지사 등록업체 1,000만원 미만, 금융위 등록업체 5,000만원 미만으로 설정하는 대안이 있으나,
 - 대부업체의 손해배상 예상 금액*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할 때 대부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 *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유형별 손해발생 예상금액은 고금리 수취는 대출금액 대비 10%, 불법 중개료 수취는 대출금액 대비 20%, 불법 추심행위는 약 1,000만원으로 예상
 - ** (시도지사 등록) 평균 대출금액 00만원, 평균 거래자 수 00명
(금융위 등록) 평균 대출금액 00만원, 평균 거래자 수 00명
- (보증금 등 유지기간) 대부업체가 등록취소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이후 즉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있으나,
 - 대부업체는 영업 종료 이후에도 대부채권 잔존기간 동안 대부업체로 간주되어 채권 회수를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대부업 영위가 가능하므로,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

< 규제대안 1 >

- (최소 보장금액) 시도지사 등록 및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를 구분하여 최소 보장금액을 각각 1,000만원, 5,000만원 수준으로 설정

- (보증금 등 유지기간) 대부업체는 등록취소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대부거래가 종결되기까지는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 예탁 등 의무를 유지하도록 함
 - 다만, 유지기간이 지나치게 장기로 설정되는 경우 대부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한도로 설정

나. 대안의 분석

< 해외사례 분석 >

- (미국 일리노이주) 원금 25,000달러(한화 약 3,000만원)까지 연 9% 금리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시하는 대부업체는 일리노이주 영업 면허를 보유한 보증회사가 발행하는 액면 25,000달러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이해관계자 협의 >

- 입법예고 기간('15.11.25~'16.1.4일)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법무부 : 수용) 보증금 유지기간(최장 3년)의 예외를 인정하여 현재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시까지 보증금액을 유지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취지를 감안하여 수용
 - (대부협회 : 불수용)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식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배제하고 보증금 예탁으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개정 법상 위임한계를 일탈하여 수용하기 어려움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개정법상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의무가 도입된 만큼, 법상 위임된 최소 보장금액 등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필요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최소 보장금액) 대부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손해배상 예상금액 및 대부업자의 평균 거래규모 등을 감안할 때,
 - 규제대안에 따른 최소 보장 금액보다 과소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경우 대부이용자 보호를 보증금 예탁 등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보증금 등 유지기간) 대부업체는 등록취소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대부거래가 종결되기까지는 대부업자로 간주되므로,
 - 유지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 대부업자로 간주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는 것이 불가능

< 결론 >

- 대부업체의 손해배상 예상금액 및 평균 거래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에서 최소 보장금액 및 유지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대부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움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0		9
총 합계		0		9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적 분석			

<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직접비용		직접 편익	총	0
	간접비용			총	0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간접비용				
	간접편익				
* 피규제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총 비용	편익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총 비용	편익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총 비용	편익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정부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 대부협회를 통해 보증금 예탁 및 공제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시행령안 제20조제3항제5호),**
- 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이 원활히 이행 중임(금감원-보험개발원 협의)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검사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부업자의 보증금 예탁 등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 가능하므로 동 규제를 집행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해당사항 없음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 제도 도입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보장금액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 향후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발생 사례를 추가 분석하여 보장금액 증액 여부를 검토할 예정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로 인해 대부이용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대부업체가 불법행위를 할 경우 기 납부한 보증금에서 배상금액이 차감되고, 보험 가입금액이 증액되는 등 불이익 조치가 예상되는 만큼 불법행위 억제력을 높이는 행위규제 효과성도 확보 가능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입법예고 기간('15.11.25~'16.1.4일)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법무부 : 수용) 보증금 유지기간(최장 3년)의 예외를 인정하여 현재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시까지 보증금액을 유지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취지를 감안하여 수용
 - (대부협회 : 불수용)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식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배제하고 보증금 예탁으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개정 법상 위임한계를 일탈하여 수용하기 어려움

9. 대부협회 의무가입대상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대부협회 의무 가입대상을 기존 금감원 직권 검사대상 대부업체*에서 법인 대부업체 전반으로 확대

* 금감원 직권 검사대상 대부업체 기준

1. 법인인 대부업자등이 2 이상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2.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경우
4.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5.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이상이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시행령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u>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u>(이하 "협회"라 한다)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④ 법 제18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p>1. ~ 4. (생략)</p> <p><신설></p> <p>5. (생략)</p> <p><신설></p>	<p>제20조(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① ----- - <u>협회</u>----- -----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 <u>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및 공제사업</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⑤ 법 제18조의5제1항에서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인 <u>대부업자등</u>을 말한다.</p>

②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0000		
	규제사무명	대부협회 의무가입대상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거래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제안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진형구		
4. 근거법령명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피규제자	대부업자	대부업자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금융이용자	금융이용자	입법예고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법에서 재검토(존속기한)을 두고 있지 않은 사항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현행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 직권 검사 대상 대부업체를 협회 의무가입대상으로 규정 			
8. 규제체계도	- 신설(강화)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대부업체를 협회 의무가입대상으로 규정 			
8. 규제체계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현 행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 직권 검사 대상 대부업체를 협회 의무가입대상으로 규정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개 정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대부업체를 협회 의무가입대상으로 규정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대부협회는 대부업권을 대표하는 법정 협회로서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 감시, 임직원 교육, 광고 심의, 보증금 예탁사업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도,
 - 현재 의무가입대상이 금감원 직권 검사 대상으로서 전체 대부업체 중 5% 내외(6,827개 업체 중 350개)에 불과하여, 협회의 대표성 및 자율 규제 기능에 한계

* 법인 대부업체는 총 1,313개로서 전체 대부업체 중 20% 수준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회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 협회의 자율 규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2.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금번 대부업법 개정('16.7.25일 시행)에 따라 금감원 직권 검사 대상 대부업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법 제12조제4항)
 - 동 대상업체를 협회 의무 가입대상으로 정하는 현행 유지안은 불가

〈 비규제대안 :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협회 의무 가입대상을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체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금감원을 통한 전문적인 검사를 받지 않아 자율 규제 필요성이 더욱 요청된다는 점, 금융위 등록 업체만으로는 대부협회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규제대안은 채택 불가

< 규제대안 1 : 협회 의무 가입대상으로 법인대부업자를 정함 >

- 법인 대부업자를 협회 의무 가입대상으로 정하여 협회의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되,
- 개인 대부업자는 대다수 대부규모가 영세하고 의무 가입을 유도할 경우 재정적 부담을 느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임의 가입대상으로 유지

나. 대안의 분석

< 해외사례 분석 >

- 해당사항 없음

< 이해관계자 협의 >

- 입법예고 기간('15.11.25~'16.1.4일)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의 반대의견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대부업법 개정으로 협회 의무 가입대상인 “금감원 직권 검사 대상 대부업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법 제12조제4항), 협회 의무 가입대상을 규정할 필요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를 의무 가입대상으로 규정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 이 경우 의무 가입대상 업체의 수가 204개로써 전체 대부업체 대비 3% 수준에 불과하여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
- * 금융위 등록대상 예상 업체는 204개(자기자본요건 충족을 전제)

< 결론 >

- 협회 자율 규제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법인 대부업자를 의무 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대부협회 의무 가입 대상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0		9
총 합계		0		9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적 분석				

<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	-----------	-----------	--------	----

2016		2016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대부협회 의무 가입대상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직접비용	총		0		직접 편익	총		0		
		총		0			간접 편익	총		0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간접 비용										
	간접 편익										
* 피규제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총 비용		0		편익	총 편익		0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총 비용		0		편익	총 편익		0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총 비용		0		편익	총 편익		0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정부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총 비용				편익	총 편익		0		
		총 비용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 협회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대부업체는 **입회비 및 월회비 납부**를 통해 **협회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집행에 어려움이 없음**

<참고자료>

○ 입회비

법인업체	월회비 × 10개월
개인업체	월회비 × 10개월 × 2분의 1

○ 월회비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 단, **최저월회비는 5만원**

대부업자	대출채권 × 0.00005 × 대출채권 대비 영업수익 비율
대부중개업자	매출액(중개 수수료 총액) × 0.00001

※ 대출채권 및 매출액은 최근기 결산서 기준 산정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해당사항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해당사항 없음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 현재 대부협회 가입 업체는 총 385개로서 전체 대부업체(6,827개) 대비 5% 수준에 불과하여 협회의 자율 규제 기능에 한계
 -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 대부업체 전반(1,313개)을 의무 가입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협회 기능 활성화를 도모
- 한편, 개인 대부업체의 경우 평균 거래자수가 27.5명, 평균 대부잔액이 1,07억원에 불과하는 등 영업 규모가 영세하고 대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의무 가입대상 확대로 인해 협회의 자율 규제 기능이 강화되어 대부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입법예고 기간('15.11.25~'16.1.4일)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의 반대의견 없음

10.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기준

1]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대부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금융위(시·도지사)의 행정조치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화(별표2, 3)**
 - **대부업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개정으로 추가된 위법행위 관련 영업정지, 등록취소의 기준을 규정**
 - * 부적격자인 임원(업무총괄사용인)의 선임, 상호출자제한집단 대부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총자산한도 규제
 - ** 대리인 선임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제8조의2),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제8조의3),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행위 금지(제8조의4)
 - **방송광고 시간 제한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시 보고 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추가로 규정**
 - **동종의 반복된 위법행위의 경우 최초 처분일로부터 2년(종전 1년) 이내에 재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조치**

<시행령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별표2>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1. 일반 기준				(좌동)
가. (생략)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 처분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 처분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생략)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좌동)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나. (생략)				
<신설>				
다.~파. (생략)				
<신설>				
하.~버. (생략)				
<신설>				
저.~커. (생략)				
<신설>				
<신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나. (좌동)				
다. 법 제4조를 위반하여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선임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영업일부정지 3월	영업일부정지 6월
라.~하. (좌동)				
거. 법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7호	영업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너.~어. (좌동)				
저.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제3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7호	영업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처.~허. (좌동)				
고. 법 제9조의7을 위반하여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영업일부정지 1월	영업일부정지 3월
노.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7호	영업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신설>					도.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일부정지 1월	영업일부정지 3월
<신설>					로. 법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
터. (생략)					모. (좌동)				
<신설>					보. 법 제11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
피.~보. (생략)					소.~호. (좌동)				
<신설>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일부정지 3월	영업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신설>					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일부정지 3월	영업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신설>					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영업일부정지 1월	영업일부정지 3월	영업일부정지 6월
<신설>					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채권추심과 관련	법 제13조제1항제1호	영업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

<table border="1">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소.~호.(생략)</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소.~호.(생략)					<table border="1"> <tr> <td>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이하 생략)</td> <td>한 호 , 제2항 제7호</td> <td> </td> <td> </td> <td> </td> </tr> <tr> <td>무.~투.(좌동)</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이하 생략)	한 호 , 제2항 제7호				무.~투.(좌동)																																																		
소.~호.(생략)																																																																			
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이하 생략)	한 호 , 제2항 제7호																																																																		
무.~투.(좌동)																																																																			
<p><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p>	<p><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p>																																																																		
<p>1. 일반 기준</p>	<p>1. 일반기준</p>																																																																		
<p>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p>	<p>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p>																																																																		
<p>나. (생략)</p>	<p>나. (좌동)</p>																																																																		
<p>2. 개별기준</p>	<p>2. 개별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 만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위반행위</th> <th rowspan="2">해당 조문</th> <th colspan="3">과태료 부과기준</th> </tr> <tr> <th>1회</th> <th>2회</th> <th>3회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가.~너.(생략)</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신설></td> <td>법 제21조제1항 제8호</td> <td>500</td> <td>1,000</td> <td>1,500</td> </tr> <tr> <td>더.~머.(생략)</td> <td>법 제21조제2항 제6호</td> <td>50</td> <td>250</td> <td>500</td> </tr> <tr> <td><신설></td> <td>법 제21조제2항 제7호</td> <td>50</td> <td>250</td> <td>500</td> </tr> <tr> <td>버.~처.(좌동)</td> <td>법 제21조제2항 제8호</td> <td>20</td> <td>100</td> <td>200</td> </tr> </tbody> </table>	위반행위	해당 조문	과태료 부과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너.(생략)					<신설>	법 제21조제1항 제8호	500	1,000	1,500	더.~머.(생략)	법 제21조제2항 제6호	50	250	500	<신설>	법 제21조제2항 제7호	50	250	500	버.~처.(좌동)	법 제21조제2항 제8호	20	100	200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 만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위반행위</th> <th rowspan="2">해당 조문</th> <th colspan="3">과태료 부과기준</th> </tr> <tr> <th>1회</th> <th>2회</th> <th>3회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가.~너.(좌동)</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더.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td> <td>법 제21조제1항 제8호</td> <td>500</td> <td>1,000</td> <td>1,500</td> </tr> <tr> <td>러.~버.(좌동)</td> <td>법 제21조제2항 제6호</td> <td>50</td> <td>250</td> <td>500</td> </tr> <tr> <td>서.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td> <td>법 제21조제2항 제7호</td> <td>50</td> <td>250</td> <td>500</td> </tr> <tr> <td>어.~터.(좌동)</td> <td>법 제21조제2항 제8호</td> <td>20</td> <td>100</td> <td>200</td> </tr> </tbody> </table>	위반행위	해당 조문	과태료 부과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너.(좌동)					더.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8호	500	1,000	1,500	러.~버.(좌동)	법 제21조제2항 제6호	50	250	500	서.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7호	50	250	500	어.~터.(좌동)	법 제21조제2항 제8호	20	100	200
위반행위			해당 조문	과태료 부과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너.(생략)																																																																			
<신설>	법 제21조제1항 제8호	500	1,000	1,500																																																															
더.~머.(생략)	법 제21조제2항 제6호	50	250	500																																																															
<신설>	법 제21조제2항 제7호	50	250	500																																																															
버.~처.(좌동)	법 제21조제2항 제8호	20	100	200																																																															
위반행위	해당 조문	과태료 부과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너.(좌동)																																																																			
더.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8호	500	1,000	1,500																																																															
러.~버.(좌동)	법 제21조제2항 제6호	50	250	500																																																															
서.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7호	50	250	500																																																															
어.~터.(좌동)	법 제21조제2항 제8호	20	100	200																																																															

②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0000																	
	규제사무명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거래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제안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진형구																	
4. 근거법령명 등	<p><근거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관련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h>의견 수렴방식</th> <th>의견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대부업자</td> <td>대부업자</td> <td>입법예고</td> <td>없음</td> </tr> <tr> <td>이해관계자</td> <td>금융이용자</td> <td>금융이용자</td> <td>입법예고</td> <td>없음</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대부업자	대부업자	입법예고	없음	이해관계자	금융이용자	금융이용자	입법예고	없음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대부업자	대부업자	입법예고	없음															
이해관계자	금융이용자	금융이용자	입법예고	없음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법에서 재검토(존속기한)을 두고 있지 않은 사항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p>- 현행 규제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가 관할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부과 <p>- 강화 규제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금융위(시·도지사)의 영업정지, 등록취소의 부과기준을 구체화(별표2,3) ○ 방송광고 시간 제한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시 보고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추가 																		
8. 규제체계도	<table border="1"> <thead> <tr> <th>현행</th> <th>개정</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가 관할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부과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 임원의 선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총자산한도의 규제 등 대부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금융위(시·도지사)의 행정조치의 부과기준을 구체화 ○ 방송광고 시간 제한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시 보고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추가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가 관할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 임원의 선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총자산한도의 규제 등 대부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금융위(시·도지사)의 행정조치의 부과기준을 구체화 ○ 방송광고 시간 제한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시 보고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추가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가 관할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 임원의 선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총자산한도의 규제 등 대부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금융위(시·도지사)의 행정조치의 부과기준을 구체화 ○ 방송광고 시간 제한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시 보고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추가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대부업자에 대하여 총자산 한도,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방송광고 시간 등의 규제 및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행정처분이 규정되었는바,
 - 동 규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 감독기관(금융위, 시·도지사)의 이원화에 따른 법집행 상의 불균형 발생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동일한 위법행위자에 대한 일관된 법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정해 감독기관의 재량권 행사를 최소화할 필요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 감독기관간 법집행 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처분 수위에 대한 대부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2.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개정법상 신설된 규제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현행 유지안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

< 비규제대안 :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대부업감독규정」(금융위 고시)의 제정·적용을 통해 행정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제재처분의 기준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 규제대안 1 : 영업정지·등록취소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 >

대부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감독기관의 행정조치(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화

○ 부적격자인 임원(업무총괄사용인)의 선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총자산한도 규제 등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개정으로 추가된 위법 행위 관련 행정조치의 기준을 규정

* 대리인 선임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제8조의2),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제8조의3),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행위 금지(제8조의4)

○ 방송광고 시간 제한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시 보고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추가로 규정

동종의 반복된 위법행위의 경우 최초 행정처분일로부터 2년(종전 1년) 이내에 재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조치

나. 대안의 분석

< 해외사례 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 기간('15.11.25~'16.1.4일)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의 반대의견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부적격 임원의 선임 제한, 신용공여 및 총자산 한도 규제 등이 신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조치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만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법령으로 정하여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 금융위 고시인 「대부업감독규정」의 제정·적용을 통해 행정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대안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우려

< 결론 >

-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상 신설된 규제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서, 규제 신설이 불가피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영업정지·등록취소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0		9
총 합계		0		9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적 분석				

<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분석 결과표 >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영업정지·등록취소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직접비용	총	0	직접 편익	총	0	
		총	0		총	0	
	간접비용	총 비용	0	간접 편익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간접 비용						
	간접 편익						
* 피규제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총 비용	0	편익	총 편익	0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총 비용	0	편익	총 편익	0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총 비용	0	편익	총 편익	0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정부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총 비용		편익	총 편익	0	
		총 비용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 대부업법은 행정처분 권한을 금융위(시·도지사)에 부여하면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 금융위(시·도지사)는 시행령 규정을 토대로 제재처분의 종류 및 수준을 결정하여 집행하면 되는 것이어서 행정적·재정적인 문제는 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및 업무보고서 징구 등을 통해 신설된 규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므로 동 규제를 집행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대부업법은 금융위 등록 대상 이외의 대부업자에 대하여 지자체에 감독·검사 및 제재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의 종류 및 수준을 결정하여 집행하면 되는 것이어서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음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 향후 신설된 규제 관련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사례를 추가 분석하여 처분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부적격 임원의 선임 제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총자산한도 규제 등 다른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가 신설됨에 따라
 - 동 규제 위반시 제재처분의 기준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불법행위 억제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입법예고 기간('15.11.25~'16.1.4일)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의 반대의견 없음